의과대학 교원 인사 내규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교육 공무원 법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및 동 시행 세칙, 고신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준거하여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인사운영에 관한 방침과 제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신규 임용

제2조 (인사심의위원회) 의과대학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]

제3조 (교원의 신규임용) 신규임용 채용에 있어 분야의 선정은 해당교실 그리고 학과의 신청을 받아 의과대학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총장에게 제청한다.[개정 2011년 4월 28일]

제4조 (신규임용 교원의 자격)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기독교신자로서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며 〈별첨1〉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단,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 [개정 2010년 4월 21일]

1. 임용조건에 미비한 자가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 후 3년 이내 임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] 이때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신규 임용시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.[개정 2011년 4월 28일]
2. 교육부 교수 임용, 승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우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
3. 전문의 자격 취득 이전의 전공과목(강의과목)에 관한 교육 또는 연구 연한은 합산할 수 있다.

4. 비 의사 교원 임용에 따른 교육 및 연구 경력은 해당 전공 경력이 전문의 자격취득 연한(인턴과정 포함)에 3년을 가산한 연수를 초과하여야 한다.
5. 이외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교원 신규 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고신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준거한다.

제 3 장 재임용 및 승진

제5조 (심사절차)

1. 재임용의 경우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이를 통보한다. [개정 2010년 4월 21일]
2. 교원의 승진은 제6조 직급별 최소 소요 연수에 달한 자로서 별첨에 따른 업적을 충족한 교원 중 원하는 자는 의과대학장에게 신청한다.
3. 재임용 및 승진대상자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구·교육·봉사 실적 관련 심사자료를 의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년 4월 12일]
4. 연구실적물에 대한 판정은 의과대학장에게 의뢰하여 판정하게 하고 판정이의가 제기될 경우 의과대학장이 외부의 해당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처리한다.
5. 의과대학장은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연구·교육·봉사실적과 신앙생활, 교원평가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사심의위원회에 이첩하여 재임용 또는 승진심사평정을 의뢰한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, 2019년 4월 12일, 2020년 11월 17일]
6. 의과대학 인사심의위원회는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고신대학교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]
7. 승진은 1년에 2회에 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3년(연속 6회)에 걸쳐 탈락하면 그 신분과 처우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신대학교 인사위원회에 이첩한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]

제6조 (직급별 승진 소요연수)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현직급	최소 소요 연수		승진되는 직급
	박사학위 소지자	박사학위 미소지자	
조 교 수	6년	**불가**	부 교 수
부 교 수	5년	**불가**	교 수

제7조 (교원의 계열구분) 교원의 업적 평가는 역할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, 전공분야 계열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 단, 계열의 구분은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, 2022년 4월 28일]

1. 기초의학계열 : **기초의학교실 소속의 교원을 말하며, 기초의학에 관련된 강의, 실습 등 교육의 책무 및 연구의 책무를 수행한다.**
2. 임상의학계열 : **임상의학교실 소속으로서** 부속병원에서 진료 및 진료지원에 종사하는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, **임상의학에 관련된 강의, 실습 등 교육의 책무, 연구의 책무 및 진료의 책무를 수행한다.**
3. 의학교육 및 인문사회의학계열 : **의학교육학교실과 인문사회의학교실 소속의 교원을 말하며, 의학교육학과 인문사회의학에 관련된 강의, 실습 등 교육의 책무 및 연구의 책무를 수행한다.**
4. 연구계열 :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**임용된 기초의학교실 및 연구소 소속의 교원을 말하며, 주로 연구의 책무를 수행한다.**

제8조 (심사기준) 승진 및 재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(별첨2), 교육업적(별첨3), 봉사업적(별첨4) 등 평가기준 배정점수 및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 단, 조교수 재임용 심사(조교수 임용 후 3년)의 경우에는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부교수 승진최소점수의 50%를 적용한다.

제9조 (경력 신규임용자) [신설 2012년 11월 27일]

1. 전임경력이 추가로 인정된 신규임용자의 경우 인정된 경력 연수만큼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줄어드나, 연구•교육•봉사업적은 승진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. 단, 경력 신규임용자가 3년 이내 승진 시에는 최근 3년까지의 연구실적을 인정하며, 교육 및 봉사업적은

승진 최소점수의 50%를 적용한다.

2. 삭제 〈2022.11.24.〉

제10조 (평가 및 평가위원)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1. 교원의 재임용, 승진 시에는 연구업적을 포함한 교육, 진료, 봉사업적에 대한 평가를 당해 주임교수가 담당하며, 주임교수, 의예과장, 의학과장, 부학장이 평가대상일 때는 의과대학 별도의 심의를 거친다.
2. 평가에 당해 본인은 참여하지 못한다.

제 4 장 보직 및 임면

제11조 (학장) 학장은 교육, 교수개발, 연구역량 등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의과대학 교수로서,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임면한다.[신설 2012년 11월 27일]

1. 정교수이며, 의과대학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
2. 의과대학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자
3. 의과대학 주요보직 및 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[개정 2019년 4월 12일]

제12조 (보직자의 자격과 임면) 의과대학의 보직은 다음에 정하는 직위에 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의과대학장의 추천과 의무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1. 부학장(교무부학장, 교육부학장, 학생부학장, 연구 및 기금부학장), 의학과장, 의예과장, 교육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실장, 임상교육지원실장, 입학홍보실장, 연구지원실장을 둔다. [개정 2011년 4월 28일, 2015년 11월 13일]
2.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.
3. 의과대학의 각 교실에는 주임교수를 둔다. 주임교수의 추천은 당해 교실의 전임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, 공모제를 통해 할 수 있다. [개정 2010년 4월 21일]

제13조 (보직의 임기 및 연임제한 및 이중보직 금지)

1. 각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의과대학의 각 교실의 주임교수의 연임제한 규칙은 각 교실의 교수 수가 2-4명시 2회 연임가능, 5-9명시 1회 연임 가능하며, 10명 이상 시 연임 불가하다.
3. 학장, 병원장, 부원장은 당해 교실의 주임교수를 겸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[개정 2010년 4월 21일]

제 5 장 계열전환

제14조 (계열전환) 전임교원의 계열전환은 신규임용 후 4년 경과한 때부터 연구실적 및 교육업적이 우수한 경우에 청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장은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계열전환 여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. [신설 2019년 5월 17일]

제 6 장 조 교

제15조 (MD조교) [신설 2010년 4월 21일]
1. MD조교는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교를 말하며, 기초의학교실의 교육과 연구를 보조한다.
2. MD조교는 매년 재임용 할 수 있으며, 그 대우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전공의에 준한다.

제 7 장 개 정

제16조 (내규의 개정) 본 내규의 개정은 의과대학 교수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.

별첨 1 전임교원의 자격기준 (임용요건) [개정 2014년 9월 17일]

직 위	교육 및 연구경력			
	기초의학계열	연구계열	임상의학계열	의학교육 및 인문사회의학계열
조교수	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	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	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	①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의사 자격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,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
부교수	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6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 11년 이상,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8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6년 이상	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6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8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6년 이상
교 수	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승진 혹은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 1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4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승진 혹은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	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승진 혹은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14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승진 혹은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

1. (연구실적 인정) 신규교원임용에는 조교수 200점, 부교수 600점, 교수 600점 이상의 연구실적을 구비해야 한다. 기초의학계열의 신규 임용시 전문의 자격증은 논문 점수 200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, 2022년11월24일]

1-1. (봉사실적 인정) 별첨4 봉사업적 평가항목은 최근 4년간 업적을 반영하여 평가한다. [개정 2019년 4월 12일]

2. (연구실적 인정기간) 연구실적의 인정기간은 최근 4년 이내(의사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제

외)로 한다. [개정 2016년 11월 8일]

3. (연구실적 환산기준)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첨 2 연구업적부문 평가기준의 산출기준에 근거한다.[개정 2019년 4월 12일]
4. (신규임용필수요건)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   가. 기초의학분야의 비의사 신규임용자의 경우 1등급 논문이 4편 이상 있어야 하며, 그 중 2편 이상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고 4편의 Impact factor 합계가 10.0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   나. 연구 분야의 신규임용자의 경우 1등급 논문이 6편 이상 있어야 하며, 그 중 3편 이상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고 6편의 Impact Factor 합계가 15.0 이상이 되어야 한다.
5. 방사선종양학교실의 물리사 업무를 위한 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별첨 2 〈연구업적부문 평가 기준〉

1. 연구실적의 범위

   가. 논문 [개정 2010년 4월 21일]

      1) 1등급 : SCI급 (SCI, SCIE, SSCI, A&HCI)에 등재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[개정 2014년 9월 17일]

      2) 2등급 : 1등급 학술지를 제외한 국제학술지, SCOPUS, PubMed 등재지 및 한국연구재단(구, 학진)등재(후보)지에 게재된 논문 [개정 2014년 9월 17일]

      3) 3등급 : KOREA MED 등재(혹은 후보)지에 게재된 논문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   나. 저서

   다. 특허

   라. 외부연구비 [개정 2014년 9월 17일]

      1) 외부연구비란 정부산하 공공기관, 산학협동기관 등에서 받은 것으로서 정규적인 심사와 공개경쟁과정을 거쳐서 수령된 것만을 인정한다.

   마. 학술회의 관련

2. 연구업적부문 평가

   연구업적부문 평점표 [개정 2011년 4월 28일, 2017년 10월 20일]

구 분	업 적 내 용		평 점	비 고
논 문	등 급	1 등급	200 점	
		2 등급	100 점	
		3 등급	70 점	
저 술	국외 저서		200 점	
	국내 저서		150 점	
	편역서		100 점	
	개정판		30 점	
특 허	국 제		200 점	
	국 내		100 점	
학술회의 관련	국제학회 주관 학술상 수상		70 점	발표자 1인에 한함
	전국규모 국내학회 주관 학술상 수상		50 점	
	국제학회 학술논문 발표	구연	10 점	
		Poster	7.5 점	
	전국규모 국내학회 학술논문 구연 발표		2.0 점	
외부연구비 수혜 (연간)	1000만원 미만		20 점	
	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		40 점	
	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		60 점	
	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		80 점	
	5000만원 이상		100 점	

3. 연구실적의 인정환산

연구실적의 연구자 수에 대한 인정 환산율 [신설 2010년 4월 21일, 개정 2023년 11월 2일]

구 분		1등급 논문	2등급 이하 논문
1인 연구		100%	100%
2인 공동연구		70%	65%
3인 공동연구	1저자 혹은 교신저자	60%	55%
	공동 저자	20%	20%
4인 이상 공동연구	1저자 혹은 교신저자	50%	45%
	공동 저자	20%	20%

가. 증례 보고는 등급별 인정 점수의 50%를 적용하고, 종설은 2등급 논문까지 인정하되 인정점수의 50%를 적용한다.[개정 2014년 9월 17일]

나. 단신, 논평, 독자편지는 1등급 논문인 경우에만 인정 점수의 50%를 적용한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다. 저술의 경우는 전문서적만을 인정하며 일반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출판물은 전문서적에서 제외하며, 공동저서인 경우 공저 저자 수에 의하여 업적 평점을 균등분배 한다. [개정 2010년 4월 2일]

라. 특허의 인정환산율은 논문에 준한다.

마. 외부연구비 수행에 있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2인 70%, 3인 50%, 4인 이상 30%로 산정하고, 책임연구원의 경우는 20%를 가산하고 이후 해당사항을 적용한다.

바. 학술회의 관련 업적과 논문 업적이 동일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사. 모든 연구실적은 승진소요기간 내의 것으로 한다.

아. 해외연수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승진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연수성과를 참작하여 다음 승진 시에 고려할 수 있다.

자. 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승봉 및 수당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1) 1년차 ~ 5년차까지 : 매년 1.0점

2) 6년차 ~ 10년차까지 : 매년 0.5점

4. 승진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

부교수 승진	교수 승진
600점	500점

가. 치과학 전공자의 경우 연구실적 심사 기준은 50%로 할 수 있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나. 표1(3장 6조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)에 따른 최소 승진 소요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구평가평점은 초과된 연수에 연동되어 1년에 50점씩을 추가하여 부과한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다. 필수논문업적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은 당해 직급 재임기간 중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경력 및 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전체 연구업적 점수의 20%를 넘지 못하며, 교육 또는 봉사업적 평가에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으나, 교육중점교수에 한하여 연구업적 요구점수의 80%까지 대체할 수 있다. [신설 2014년 9월 17일, 개정 2017년 2월 17일]

①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자료 개발점수를(PBL 모듈 15점, CPX, 멀티미디어 문항 10점, OSCE 5점)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[개정 2016년 2월 18일, 2022년11월 24일]

② 교육과정 책임교수, 임상실습 담당교수, 학생인턴과정 책임교수, ICM 및 OSCE/CPX 책임교수, PBL책임교수의 경력은 승진시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의 5%까지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1년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. (단, 책임교수/담당교수의 경력 인정은 교육업적평가 시행지침에 의거한다.) [개정 2016년 2월 18일]

③ 의학과장, 의예과장, 교수학습지원실장, 임상교육지원실장, 교육중점교수의 경력은 승진시 필요한 연구업적 요구 점수의 10%까지 대체하여 인정하며, 1년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. [개정 2016년 2월 18일, 개정 2017년 2월 17일]

④ 교육업적의 필수업적 중 교육참여 점수를 초과한 나머지 교육참여 점수에 대해서는 10점당 연구실적 5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단, 교육중점교수의 교육업적 평가는 별첨 3-1를 참조할 수 있다. [신설 2016년 2월 18일, 개정 2017년 2월 17일]

라. 외부연구비, 특허, 저술, 학술회의, 교육업적 대체점수의 합이 전체 연구업적 점수의

30%를 초과하여 반영될 수 없다. 단, 교육중점교수는 예외로 한다.[신설 2014년 9월 17일, 개정 2018년 4월 12일, 개정 2018년 12월 18일]

5.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

조교수	부교수
200점	400점

가. 치과학 전공자의 경우 연구실적 심사 기준은 50%로 할 수 있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나. 재임용시 연구실적의 환산은 승진시 기준에 준한다. [신설 2018년 12월 18일]

6. (필수논문업적)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위 업적물 중 다음의 원저 논문업적이 포함되어야 한다. [개정 2010년 4월 21일, 2019년 4월 12일, 2019년 5월 17일]

가. 임상의학계열의 경우 부교수 승진 및 교수 승진의 경우 연구실적물 중 1등급 논문이 2편 이상 필요하다. 단 2편 중 1편은 2등급 논문 3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나. 기초의학계열의 경우 부교수 및 교수 승진 시 1등급 논문 5편 이상 또는 Impact factor 합계가 10.0 이상이 필요하다. 단, MD교원인 경우 “가”항에 준한다. [개정 2019년 5월 17일]

다. 의학교육 및 인문사회의학계열의 경우 부교수 승진 및 교수 승진의 경우 연구실적물 중 1등급 논문이 2편 이상 필요하다. 단, 2등급 논문 6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라. 연구계열의 경우 부교수 및 교수 승진 시 1등급 논문 6편과 Impact factor 합계가 15.0 이상이 필요하며, 외부연구비 수혜 실적이 300점 이상 있어야 한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, 개정 2017년 10월 20일]

마. 승진대상자는 필수논문의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.

바. 치과학 전공자인 경우 1등급 논문 대신 3등급 이상의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 [신설 2010년 4월 21일]

사. 연속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육중점교수는 1등급 논문 1편, 또는 2등급 논문 3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.[신설 2019년 4월 12일]

별첨 3 〈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 점수〉 [개정 2016년 2월 18일, 개정 2023년 11월 2일]

평가항목		배정점수	비 고
수업 (/연간)	8시간이내	5	학생 강의는 실시간을, 기초의학 실습 및 지도는 2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하며, 타 대학 학생 강의는 인정하지 않는다.
	9 ~ 32시간	10	
	33 ~ 64시간	20	
	65시간 이상	30	
학생상담 (/연간)	학생 소단위지도교수 참여	10	학생상담은 연간 4회 이상으로,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결과를 의과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.
	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학생상담 활동 참여	5~10	
학위지도	석사배출 1인당	10	학위취득시점으로 점수 산정
	박사배출 1인당	10	
	석,박사논문심사(건당)	5	
교육과정 운영	교육과정 책임교수	10	교육과정 책임교수/부책임교수란 현재 학점이 부여 되는 모든 교육 과정의 책임/부책임교수를 말한다. 임기가 있는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한다.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 활동에는 학생인턴과정 참여를 포함한다.
	교육과정 부책임교수	5	
	임상실습 담당교수	10	
	학년별 담임교수	10	
	의학교육관련 위원회	5	
	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활동 참여	5~10	
교육관련 연수	교육관련 연수* 강사	10	*의학교육관련 학회, 연수 프로그램, 워크샵, 세미나
	교육관련 연수* 단순 참여	5	
	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관련 연수* 단순참여, 강사	5~10	
교육 참여	임상수기교육 참여(건당)	10	임상수기교육 참여란 ICM과정, OSCE/CPX 교육 및 채점에 직접 참여 하는 것을 말한다. TBL소그룹 교육은 학기동안 매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.
	PBL교육(튜터) 참여(건당)	10	
	TBL소그룹 교육 참여	10	
	연구교육과정 참여(학기당)	10	
	자유선택과정	10	
	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 참여	5~10	
교육자료개발	기종평/임종평 문항개발	5~10	기종평/임종평 문항개발은 문항 당 1점으로 환산하되 매년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.
	OSCE/CPX 개발	5~10	
	PBL모듈 개발	5~10	
	CBT, CBL, e-learning 컨텐츠, WBI, 기타 IT 교육자료 개발	5~10	
	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내 학생교육 관련활동 참여	5~10	

(※ 교육업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업적평가 시행지침에 따른다.)

1. 직급기간 내 교육업적 최소점수는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6년 2월 18일]
   가. 의학교육학계열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30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250점
   나. 임상의학계열, 기초의학계열 및 인문사회의학계열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20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180점
   다. 연구계열 및 치과학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6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50점

2. 신임교원임용 후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년 9월 17일, 2019년 4월 12일]

3. 전임교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의학교육 연수나 교육관련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 [신설 2019년 4월 12일]

4. 임상의학계열, 의학교육학계열 전임교원의 직급기간 내 교육업적 중 ① 교육과정 운영, ② 교육관련 연수, ③ 교육 참여에서 다음의 필수업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. [개정 2016년 2월 18일]
   가. 교육과정 운영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2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30점
   나. 교육관련 연수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3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30점
   다. 교육 참여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100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100점

별첨 3-1 〈교육중점교수의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 점수〉 [신설 2017년 2월 17일]

평가 항목		배정점수	비 고
교육과정운영	교육과정개발 (건당)	100	• 교육과정 개발
	교육과정평가 (연간)	100	• 성과바탕교육 개발 및 평가 • 교육과정평가를 위한 활동
교육관련연수	의학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(건당)	50	• 교내외 의학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
임상실습교육	임상실습교육 평가 및 피드백 (연간)	100	• 임상실습과정 개발 및 평가 • 임상실습지침서 개발 • 임상실습 포트폴리오 개발
임상수기교육	임상수기 교육과정 개발 (건당)	100	• ICM, OSCE/CPX 교육과정 개발
	임상수기 교육과정 운영 (교육과정 당)	50	• OSCE/CPX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 • OSCE/CPX 표준화환자 교육 • OSCE/CPX 피드백 교육
교육자료개발 (문항개발 및 평가)	기종평 문항평가 및 피드백 (연간)	100	• 기종평 출제계획표 작성 • 기종평 문제은행 관리 • 문항 평가와 문항 개발자 피드백
	임종평 문항평가 및 피드백 (연간)	100	• 임종평 출제 계획서 작성 • 임종평 문제은행 관리 • 문항 평가와 문항 개발자 피드백
교육자료개발 (교육정보화)	교육정보화 개발 및 관리 (연간)	100	• 멀티미디어 문항개발 • e-learning 프로그램, 자료 개발 • 수업관리, 교수학습지원 전산화 개발

별첨 4.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 점수 [개정 2014년 9월 17일, 2019년 4월 12일]

구 분	기 준	배점	내 용
교내보직	총장	7	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
	부총장	6	
	의과대학장, 본부 처(실)장, 대학원장, 부속병원장	5	
	부학장, 부속병원 부원장, 대학원 의학과장	4	
	기타 부속기관 원장, 기조실장	3	
	의학과장, 의예과장, 기타 부속병원 부장(연구소장)	2	
	교수학습지원실장, 임상교육지원실장, 연구지원실장	1	
	주임교수,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보직	1	
학교 및 병원내 위원회	각종 위원회 위원장	2	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
	각종 위원회 위원, 교수협의회 임원	1	
각종 수상	국제단체 수여	5	건당 환산함
	국가 및 지방정부 수여	3	
	학교, 공공단체 수여	2	
학회임원	국제학회 회장, 국제학회 임원, 국내학회 회장 국제학회지 편집위원장	4	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
	국내학회 지회장, 국내학회 임원 국내학회지 편집위원장, 국제학회지 편집위원	2	
	국내학회 지회 임원, 국내학회 편집위원	1	
교수회의	교내 의과대학 교수회의 참석	0.5	1회 참석 당
	부속병원내 전체 임상교수회의 참석	0.2	1회 참석 당
국제 및 전국규모 학술대회	학회 좌장, 초청 강연	1	*국제행사는 3 개국 이상이 참여한 경우를 의미 *학술대회 개최실적은 조직위원회 (진행 및 준비) 책임자에 한함. *학회 좌장 1회당 1점, 초청강연 1회당 1점
정부, 공공기관, 기업체 등 자문, 강연, 사회교육, 사회봉사	공공기관, 기업체 자문 국책사업 참여(단장 및 부장급 이상)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	1	*자문(기간 중 계속담당 기준) : 건당
	공공기관, 기업체 강연 국가기관 과제심사(한국연구재단) (연구 업적 실적물과 중복 인정 불가)	0.5	*피초청 강연 (타대학교, 전문대학, 의사보수교육, 건강강좌 포함) : 1회당 0.5점
	사회교육 프로그램	0.5	*사회교육 : 1회당 0.5점
	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 홍보 공식 참가 실적 우수교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 홍보 공식 참가 교수 국내외 대학 입학 박람회 공식 참가 교수	1	건당 환산함
	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의료선교 참가 교수 해외봉사, 국내 봉사, 자선사업	1	
	교내외 강연 또는 특강(대학원 제외) 각종 고시 등 교외시험문제 출제 · 선정 · 채점 위원 대학인증평가 단장 · 위원, 병원인증평가 단장 · 위원 TV 또는 라디오 출현, 신문 또는 각종 언론 매체 컬럼 수준 게재물 보도 (일간지) (연구 업적 실적물과 중복 인정 불가)	0.5	
수련의 교육	수련의 교육(기간 중 계속 담당 기준)	1	임상교수에 한함(주임교수가 평가) : 실습교육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가중치 부여 A:1.0 B:0.5
진 료	상	3	임상교수에 한함 (병원장 평가에 따라 산출)
	중	2	
	하	1	

1. 직급기간 내 봉사업적 최소점수는 다음과 같다.[개정 2012년 11월 27일]
   가. 임상의학계열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11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11점
   나. 기초의학, 인문사회의학 및 의학교육학계열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6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6점
   다. 연구계열
      1) 조교수에서 부교수 : 3점
      2) 부교수에서 교수 : 3점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내규는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7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연구업적평가는 승진자와 재임용자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적용한다.
8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, 인사내규 10조, 10조-2는 2008년 4월 신규 및 승진 심사에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교원승진 연구업적평가는 2008년 10월부터 적용하고, SCI급 학술지의 승진에 적용은 2010년 4월부터 적용한다. 교육업적에 관한 조항(별표3-교내외 학생교육관련 연수)은 2008년 10월부터 적용한다.
9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며, 별첨 2의 연구업적부문 평점표와, 4항의 나, 다 항은 2011년 10월 임용대상자부터, 별첨 2의 6항의 가, 나항은 2014년 4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10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별첨2의 연구업적부분 평가기준의 개정 조항은 2012년 4월 임용대상자부터 별첨3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 점수의 개정

조항은 2012년 10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
11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2장 신규임용의 4조 1항을 제외한 개정조항 및 별첨2 연구업적과 별첨3 교육업적의 평가기준 개정조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별첨2 연구실적의 범위, 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에 대한 개정 조항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 임용자부터 시행한다.
1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4. (전임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전임강사제도 폐지(2012년 9월 1일) 이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임용이 된 교원에 한해서는 조교수 임용일로부터 부교수 승진까지 소요연수는 4년으로 하고 연구실적물도 400점 이상으로 한다. [개정 2015년 10월 15일]
1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16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며 별첨 3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에 대한 개정조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17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18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19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별첨 2 연구업적부문 평가 기준에 대한 개정조항은 2018년 3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20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별첨 2 연구업적부문 평가 기준의 승진임용연구실적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조항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2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2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4. (경과규정) 이 내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(심사절차)에 대한 개정조항은 2020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2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6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27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